



韓國政府刊行物의 發刊에 대한 統計的 考察

崔 貞 泰
서울大圖書館

1. 政府刊行物의 意義와 範圍

우리가 政府刊行物을 理解하는데 있어서 우선 그 意義와 範圍에 대하여 明確한 概念과 뚜렷한 基準을 미리 設定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것은 政府刊行物이라고呼稱할 때 그 말이 解釋如何에 따라 넓은 意味와 좁은 意味의 政府機關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政府刊行物도 그 기준에 따라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는 것이다.

가령, 政府를 狹義의 行政부단을 의미한다면 政府刊行物의 범위는縮小될 것이고 廣義로立法, 司法, 行政府를 包括한다면 그 범위는 보다 넓어질 것이며 나아가 좀 더 擴大하여 國定豫算으로 運營되는 國家機關全體 그리고 이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外部團體, 管轄機關, 附屬機關, 이를테면 國立大學校, 研究所등 포함시킨다면 그 범위는 더욱 넓어 질 것이다.

이런점에 대하여 아직까지 이를確定시킬만한 理論이나 根據가 없기 때문에 國家마다 機關마다 見解를 달리하고 있다.

韓國圖書館協會의 「圖書館用語集」에는 “政府刊行物이란 政府各機關에서 刊行한 各種의 刊行物을 指稱한다”¹⁾라고 넓은 意味로 해석해서 政府機關에서 刊行한 것이면 무엇이든 모두 政府刊行物로 認定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用語에 대한 法的 制度는 없지만 美國에서는 이미 法律에 의하여 그 定義가 定해져 있다. 즉 “政府刊行物이란 政府의 經費에 의하거나 法律의 要求에 의하여 個個의 文書로서 發行되는 情報資料(information matter)이다”²⁾라고 규정하여 政府刊行物은 政府의 經費(government expense)와 法律의 要求로써 발행되는 개개의 刊行物을 通稱하여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는 政府機關의 범위를 밝히지 못하여 漠然한 感이 없지 않다.

또 美國圖書館協會의 「圖書館用語集」에 의하면 “法律上 組織된 政府機關의 權限으로 費用을 부담해서 刊

行되는 報告書, 圖書, 雜誌, 팝포렛, 地圖 등을 印刷 또는 作成한 것”³⁾이라는 定義를 내려 形態의in面만置重하였을 뿐 政府機關의 範圍와 그 限界에 대하여는 뚜렷하지 않다.

그리고 「유네스코出版物國際交換便覽」에는 위의 것을 다소 補充하고 있는바 “國家政府機關의 命令 및 費用에 의하여 發行되는 國會의 文書, 報告書, 議事錄, 기타 立法上의 刊行物 및 報告書, 國家書誌目錄, 行政要覽, 法律集 및 法院의 判例集, 其他 合議卷 刊行物이다”⁴⁾라고 하여 廣義의 政府 즉立法, 司法, 行政府의 諸資料를 綱羅시키고 있다.

한편, 日本의 경우를 보면 「政府刊行物普及協議會」에서 編하는 「政府刊行物月報」가 每月 刊行되고 있는데 同月報 每 標題紙 裏面마다 “政府刊行物 普及強化에 대하여”라는 표제의 글을싣고 있다. 거기에 보면 “政府刊行物은 政府機關이 編輯하는 印刷物로서 販賣 또는 頒布하는 것”(1956年 開議承認)이라고 그 定義를 밝히고 있으나 이것 역시 政府機關의 범위가 막연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政府刊行物調整審議委員會가 設置되어 “同委員會에서 審議對象으로 하는 各種刊行物을 政府刊行物이라고”(政府刊行物販賣普及規程[總理令 第47號(1965. 6. 24) 第1條])規定하고 있지만 이것마저 審議對象 與否問題로 深의 대상에 놓느냐 안놓느냐에 따라 政府刊行物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금曖昧模糊하게 되어있다.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우리나라를 爲始하여 日

- 1) 韓國圖書館協會, 圖書館用語集 1966 p. 105.
- 2) United State Code, Title 44- Public Printing and Documents: § 1901. Definition of Government Publication.
- 3)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Glossary of Library Term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43, p. 159.
- 4) Unesco, Handbook on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Paris, Unesco, 1956 p. 30.

3. 發刊當局者에 대한 建議

政府刊行物의 發刊目的이 根本에 있어서는 國家의 政治와 行政體制를 効果의 으로 알리는데 있다면 發행된 그 出版物에 어려한 것이 있는가를 一般國民에게 널리 알려서 그것을 쉽게 利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先進諸國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政府의 한 特定機關에서 一元化된 制度下에 印刷에서 부터 刊行, 配布가同一機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同時に 政府刊行物을 利用하는데 있어서 萬人이 利用할 수 있도록 法制化하여서 網羅의이며 새로운 目錄들이隨時로 發刊되고 幅闊은 普及을 위해 全國에 被은 수의 보급기구를 설치하여 普及販賣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反面에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政府刊行物의 印刷와 刊行이 單一機關에서 集中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分散된 機關에서 각각 發行하고 있으며 그것도 定期刊行物의 경우에는 無計劃性에서 오는 짧은 수명을 가진 刊行物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配布에 있어서도 亦是 統合된 配布機構가 없고 거의가 統一된 配布原則도 없이 配布되고 있다. 또한 政府刊行物의 철저한 保管을 임무로 하는 國家의 保存圖書館制度가 없다. 다만 國立中央圖書館과 國會圖書館이 각기 納本規程에 의하여 收集하고 있으나 完全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資料들의 利用面에 있어서도 目錄의 不備와 普及機構의 不足으로 全國民이 充分히 利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實情이다.

以上과 같은 諸現狀에서 오는 問題點을 打開하기 위한 措置로 다음 몇 가지를 提議하는 바이다.

첫째, 政府刊行物 發刊機構의 設置이다. 現存하는 政府刊行物調整審議委員會의 機構를大幅强化하여 그의 機能¹²⁾ 이외에도 政府刊行物의 發刊의 調整까지도 전담하여야 할 것이며 同委員會에 附設印刷機關을 設置하여 둘이른바 美國의 「政府印刷所」(Government Printing Office)와 같은 機構의 役割을 한다던지, 아니면 次善策으로 日本의 「大藏省印刷局」같은 機構를 설치하여 被은 政府의 印刷物을 單一기구에서 처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同時に 이곳에서 完璧한 政府刊行物 目錄을 作成하여 보다迅速한 情報를 提供하여야 할 것이고 모든 政府刊行物을 이곳에서 集中的이고 一元化된 配布를 하게 함으로써 行政의 能率을期하여야 할 것이다.

12) 同會規程 제4조, ①간행물 내용의 중복여부와 유사간행물의 폐간 또는 통합 ②간행물의 판매격부 및 방법 ③기타 간행물발간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둘째, 客觀性 있는 配布基準의 設定인바 從來의 政府刊行物配布는 活用을 위한 目의이나 必要性을 고려치 않고 團體나個人에게 無計劃한 配布를 한 點이 缺乏하다. 그러므로 發行機關은 이것을 止揚하고 最大限의 活用과 必要性를 침착하여 客觀性 있고 一貫性 있는 原則을 세워야 하며 이미 納本法에 依해 규정되어 있는 國立中央圖書館과 國會圖書館에는 철저하게 納本되어 있어도 「정부간행물목록」에는 빠짐없이 記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前項 <表 3>에서 이미 例示된 바와 같이 發行機關의 發行原則과 發行頻度가 不規則한 點이 적지 않다. 특히 定期刊行物의 경우 刊行物名이 즉흥적으로 변경되는 例가 非一非再하여 刊行種別이 자주 달라져 利用者가甚한 不便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發行機關에서는 特定物의 發行에 앞서 充分한 事前調查와 앞으로의 持續性等의 研究檢討가 있은 後에 施行하여야 할 것이고 同刊行物의 發刊으로 미치는 政府와 國民에의 영향까지 考慮함이 바람직하다.

第16回 全國圖書館大會發表論文 募集

今般 本協會는 오는 10月中 釜山에서 開催 豫定인 第16回 全國圖書館大會 發表論文을 다음 要領에 의하여 널리 募集하오니 會員 여러분들의 積極的 인參與를 바랍니다.

1. 主題內容: 最近 우리 國家社會는 圖書館의 機能擴大를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要求하고 있어 이에 鉅극 對處할 수 있는 圖書館發展策이 時急히 마련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번 第16回 全國圖書館大會에서는 이러한 時代的 要求에 對應하는 앞으로의 「우리나라 圖書館發展方向」에 대한 圖書館界의 意見을 再檢討하고 詳解해 보고자 합니다. 全體圖書館人들의 討論의 廣場인 全國圖書館大會席上에서 기坦없이 發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提出方法: 發表하고자 하는 主要內容을于先 200字 원고지 20枚未滿으로 簡略하게 要約하여 提出하기 바람.

3. 提出期限: 1978年 8月 25日 까지

4. 審查決定: 專門委員會의 審查를 거친후 8月 31일까지 연락할 것임.

5. 發表時間: 50분(원고지 60매 ~ 80매 정도)

6. 其他: 其他詳細한 內容은 事務局으로 問議하시기 바람